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08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양부남ㆍ권향엽ㆍ김한규

김현정 • 민형배 • 안도걸

이광희 • 이해식 • 전진숙

조계원 · 채현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 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② (생 략)	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	
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	
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	
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	
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	
고하여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	<u><삭 제></u>
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	<u><</u> 삭 제>
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	<u><삭 제></u>

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 스통신사업자

-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 <삭 제> 업자가 관리 · 운영하는 인터 넷언론사
-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 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 ⑭ (생 략)

<u><삭 제></u>

④ ~ ⑭ (현행과 같음)